

정보통신관련 창업절차 해설

개인이 기업을 창업한 후 건전한 경영관과 경영이념에 입각하여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이룩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기업의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극복하면서 기회로 인식하기에는 기업들의 자생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최근 고임금, 고물가, 고금리, 고물류비의 4고(四高)는 기업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이 처해 있는 여건이 불안하다고 하지만 매년 새로운 기업이 창업하여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국내기업의 경쟁력·생산력 약화의 현상을 직시하면서, 일련의 기업활성화 방안 및 창업기업(벤처기업 포함)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해 1997년 8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종합기업서비스지원(Inno-NET) 시스템 구축을 준비중에 있어, 향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사업과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동안 전혀 창업희망자에게 창업관련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다만, 이를 통합,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편집자 주>

강 일 택 KPC부설 한국기업상담 부장

본 론

지금부터는 정보통신사업과 관련하여 무선전화기 제품을 제조·생산하려는 경우의 가상 창업절차에 대해 창업초기단계부터 공장설립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다.

사업아이템 선정

사업아이템을 선정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업이 50%쯤 진행된 것이나 다름바 없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연구·

개발하여 사업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기술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가지 아이템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이 사업화 하려는 분야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 경쟁회사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지 심사숙고를 해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 사업아이템을 결정하기에 앞서 최소한 2~3개 정도의 사업아이템을 서로 비교분석하여 자신의 경험, 적성, 능력에 알맞는 아이템을 하나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업아이템이 무선전화기 제조라고 가정하면, 창업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회사나 투자회사를 방문하여 상담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타당성검토 및 사업계획수립

사업타당성검토란 계획사업에 대한 경제성, 시장성, 경쟁성 등을 사전에 검증절차를 밟는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그 제품을 사용할 최종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이는 곧 사업실패로 직결된다. 그러므로 최근 무선전화기의 소비행태, 시장규모 및 시장전망, 가격동향, 경쟁업체의 현황(외국업체 포함) 등을 분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당성검토 작업은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창업자가 계획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창업자 자신이 먼저 자체 검토를 한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무선전화기 제조업)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면 용역비용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어, 객관적 입장에서의 검토가 가능하다.

사업타당성검토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자금용자 신청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 신청시 등에 제출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되고있다.

자금계획

창업자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그 첫번째가 자금부문이며, 자기자본으로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없으며, 혹 자기자본이 충분하다고 해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자금외에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되므로, 총소요자금의 정확한 추정이 요구된다.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획득한 기술집약형 사업, 기술품질을 획득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획사업을 사업화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총소요자금 및 자금조달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총소요자금 계산

이는 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설자금이란 공장부지 매입비용, 건축공사비용, 기계설비 구입비, 집기비용, 창업비용 등과 같은 자금을 말하며, 운전자금은 통상 변동비 성격의 제조비용, 일반관리비 등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합계액이 총소요자금이다.

자기자본 / 타인자본

총소요자금의 규모가 개략적으로 파악되었으며, 창업자 자신이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금액(현물포함)을 먼저 고려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차입을 하게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차입이란 차입기관별로 상환기간이나 이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무선전화기 제조업의 경우 특허를 획득하였거나, 첨단기술로 인정될 때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창업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화촉진기금이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민생활의 질의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통신설비 구입·개체, 정보통신기술 개발, 멀티미디어산업 등에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무선전화기 제조업을 사업화하려는 창업자는 자사 제품이 특허를 획득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에 정보화촉진기금 중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자금의 지원범위는 시설·운전자금 모두 가능하며, 융자조건을 살펴보면 연간 금리 6.5%,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이내에 상환 및 소요자금의 8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무선전화기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촉진기금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사업자금」이나 「국책연구개발지원사업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창업조성자금

무선전화기의 제조·생산을 위해서는 공장을 갖추어야 하는데, 창업조성자금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창업자에게 시설·운전자금을

용자지원하는 자금이다. 이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공장)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도)에 신청하면 된다. 창업조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창업후 2년이내인 업체면 가능하며,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고후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출금리는 연6.25%,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하여 7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통상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있다.

○ 금융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용자는 통상적으로 담보대출형태를 취하고 있어 담보제공이나, 해당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자라도 정부에서 중소기업전담은행으로 지정한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동은행 및 동남은행에 문의할 필요는 있으며, 또한 산업은행 및 기타 시중은행에도 대출조건에 대한 확인 절차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회사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일부터 7년이내인 창업자를 대상으로하여,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미흡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형태로 지원하는 회사를 말한다.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형태는 주로 무담보 주식인수, 약정투자, 전환사채인수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경영권 확보 측면을 감안하여야 한다.

○ 기타

상기한 이외에 창업자가 자금을 용자·조달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기술금융회사, 리스, 팩토링, 사채(社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

회사설립이란 회사의 형태를 갖추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기업으로 구분하며, 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상법상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중 한가

지를 취하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창업자가 직접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일일이 공증을 받고 정관을 작성하며, 창립총회의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면 아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단,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5,000만원의 자본금(납입자본금)과 등록 제비용을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에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었으면,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무선전화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경우 업종분류는 제조업(32202)로 신청하며, 7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인기업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된다.

공장입지 선정

무선전화기를 제조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하는데 공장입지는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대별된다. 계획입지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의미한다. 계획입지에 입주할 하게되면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신청 없이 분양 혹은 임대하여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의 정책도 가능하면 계획입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신청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산업단지는 각 ‘시, 도’, 농공단지는 각 ‘시, 군, 구’에 하면 된다.

반면에 개별입지란 계획입지이외의 입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 입주하는 것으로, 개별입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 군, 구에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업은 아파트형공장 및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공장입지의 선정은 업종의 특성 및 공장부지의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이란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창업

일부터 5년이내 업체로써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 영위하려는 창업자에게 공장설립과 관련된 30개 법률 62개 인·허가사항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의제처리되는 매우 유용한 제도로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의존하였으나,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30일내 처리가 되며, 늦어도 45일이내에는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정부에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의뢰하면 용역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창업자로서는 상담회사에 의뢰하는 것도 창업절차를 간편하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무선전화기를 제조하기 위해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사업계획이 승인에는 일부승인, 조건부승인, 변경승인 및 전부승인이 있는데, 신청후 승인을 받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100% 면제되고, 농지전용부담금 또는 산림전용부담금이 50% 감면된다. 환원하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의 면제나 감면 혜택이 없다. 다음으로는 부담금을 지정된 납입장소에 납입한후 공장건축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면 된다.

창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창업일(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법인은 법원에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지방세 중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 50%를 감면하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를 감면한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창업자' 및 '수도권 외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하여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며 다만, '수도권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30%를 감면한다.

따라서 무선전화기를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지방세 및 국세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감면세율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여야 한다.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증 교부

공장설립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공장설립절차

절 차	내 용	구비서류
공 장 설립 승인 신청	- 공장건축연면적 500㎡이 상의 공장을 신·증설하고자하는 자는 착공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신청	공장설립승인 신청서, 사업 계획서
공 장 설립 승인	- 승인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지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적합할 경우 승인 - 농지전용허가, 국토이용 계획변경 등을 일괄 처리	
공 장 설립 완료 신고	- 공장건축을 완료한 때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함	- 공장설립완 료 신고서
공 장 등록 증 교부	- 공장설립완료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초 승인내용대로 공장설립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장등록 증을 발부 함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별법과 달리 별도의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사업개시

단계별 사업추진일정에 의거 공장설립이 완료되고,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게 되면 공장설립 완료시점에 맞춰 인원계획에 따라 인원을 충원하고, 기계설비 및 원부자재를 설치·구입하여 시운전을 거친 다음 정상 가동을 개시하면 된다.

결론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무선전화기를 제조하고자 창업하는 사례를 사업아이템선정 단계부터 공장설립완료 및 공장등록증 교부 단계까지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창업절차가 반드시 상기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서가 바뀔수도 있으며,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창업하려면 절차상의 문제 및

정상가동까지의 시간이 2~3년씩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꼭 그런것 만은 아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일괄 의제처리되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간소화되어 있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들은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아이템에 대해서는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방향은 짧은 시간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법률을 개정하여 창업절차의 간소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지원기관(투자회사, 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등)들의 적극적인 활용도 창업자에게는 유익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끝으로 창업의 모든 부문이 완료되었다고 사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개시부터가 실질적으로는 더욱 힘들고 어려운 난관과 애로사항을 심하게 겪게 될 것이므로 창업자들은 항상 창업관련지원기관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정보통신윤리 심의신청 안내

•심의대상

- 한국통신의 700 교환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 내용

•심의절차

- 음성정보 가입자가 사전 심의신청
- 정보내용의 건전성 여부, 이용과 보호 측면에서 심의
- 심의 결과에 따라 적합, 부적합, 보완의견 한국통신에 통지
- 한국통신에 최종 적합여부 결정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 접수
- 지방에 한하여 우편접수 가능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0-1 세라빌딩 16층 정보통신윤리위원회(TEL : 5131-139)

•신청시 구비서류(각 3부)

- 심의신청서
- 정보내용 요약서
- 시나리오
- 정보내용의 목차

•신청자

- 전화정보제공사업자(700사업자)

•처리기간

- 신청후 30일 이내